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7. 2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지 안의 조경면적과 식재 등 조경 설치기준은 부천시건축조례 제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
-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재의 수목 및 수립의 보호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보호수목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부천시조경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의 조경시설물과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녹지대 및 가로수 등에 대하여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도로법 등 관련법 및 이에 근거한 조례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 식재하는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물(이하 “조경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관리청”이라 함은 조경시설물의 설치 등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 주체를 말한다
4.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될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6.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전 등을 위하여 가로, 노변 또는 하천변 등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

제 2 장 대지안의 조경과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4조(대지안의 조경면적)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 부천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시설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은 부천시건축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 ①관리책임자는 제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수형 조정 및 위협예방 목적),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조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기능유지 보수 및 정비
6. 기타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②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된 경우 또는 나무모형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를 보식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안 또는 공공주택단지 안의 조

경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조정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3. 기타 당해 조정시설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숙아내기, 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①관리청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정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정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1. 건축물 사용승인시 받은 조정시설물의 변경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기타 조정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녹지의 보호

제9조(수목 등의 보호 및 회복)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재의 수목 및 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및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 옥외조정시설물의 유지관리(이식,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 감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재건축, 재개발 계획승인서에 부대조건으로 계획 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존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목의 지정) ①관리청은 수목의 모양이 미려한 나무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수목 등의 지정여부, 수목 등의 보존, 조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목으로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호수목으로 지정하였을 때는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수목 소유자의 의무) ①보호수목의 소유자는 당해 보호수목 등이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목 등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목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수목 유지 관리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목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보호수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가로수 식재 관리

제13조(가로수 식재)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수종은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

③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로 한다.

④가로수는 단일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 이상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⑤가로수 식재는 활착이 양호한 식재 적기에 심어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수형 조절을 위한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병충해 고사지 등을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공공 안내판을 가리거나, 통행과 주변 건물에 저촉되는 수목 또는 사고피해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③가로수의 성장 추진과 조기 황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시설, 거름주기, 환토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손괴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의 결실을 수확하는 행위

제16조(시민관리제 실시)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민간, 인근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가뭄시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기타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위탁관리 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손상자부담금 등 징수) ①관리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는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자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 시설물을 이식(이설) 또는 제거할 때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식(이설)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자부담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5 장 녹화지원 장려

제19조(녹화지원)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물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경관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②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녹화장려) ①시장은 도시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푸르고 살기좋은 녹색부천가꾸기 등의 시민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 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민식수의날 지정) ①시장은 시민이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시민참여) ①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녹화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 수립
2.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
3.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4.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5. 조경계획 및 설계의 자문(수종선택, 규격, 배식방법 및 조경시설물 설치, 옥상조경 등)

제2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가로수 등의 관리대장) 시장, 구청장은 보호수, 가로수,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내지 제5장 및 제30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손상자부담금 등 산정기준

(18조 관련)

구 분	부 담 금	비 고
벌목(제거), 나무줄기절단, 소생이 어려운 피해, 부적기 무단이식 등	재료비+노무비+제경비	재료비 중 나무가격은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고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자료지 또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함.
적기 이식공사를 위한 지장수목 이식 등	직접공사비 + 제경비	적기 •춘기 : 3. 1 ~ 4. 30 •추기 : 10. 1 ~ 11.30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가지치기	수목대의 20% + 실작업비	수관부의 3분의 1 이상 가지치기를 말함.
가지치기	실 작업비	